

대전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10155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5. 1. 21.

판결 선고2015. 2. 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653,121원 및 그 중 561,895,369원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4. 5. 5. 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10. 30.접수 제1478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3부동산 중 661/1,983 지분에 관하여 2013. 9. 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3부동산 중 661/1,98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9. 12. 접수 341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3부동산 중 661/1,98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3부동산 중 661/1,98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12. 16. 접수 제4713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2. 10. 체결된

채권양도 ·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피고 D와 피고 B 사이의 2013. 12. 10.자 채권양도 · 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5.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 3, 4항 및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2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신용보증의뢰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2013. 5. 2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남아 있다)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친누나이다. 한편,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2012. 11. 22. 피고 A와 사이에 같은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시설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2. 11. 22. 피고 A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100,000,000원, 보증기한 2020. 11. 20.로 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서를 우리은행 계룡지점에 제출하고 위 지점으로부터 2012. 11. 28.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8. 28. 이후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2013. 12. 20.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4) 원고는 2014. 3.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561,895,369원(= 원금 550,000,000원 + 이자 11,895,3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가 위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은 3,322,142원이고, 추가보증료 3,435,61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4. 3. 1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6) 한편, 피고 A은 계룡시 F 공장용지 3,249.2m²(이하 '이 사건 A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티200 지붕용 난연판넬 단층공장(식품공장) 1,548.43m², 일반철골구조 티에이치케이200 지붕판넬 단층공장(사무소, 식당) 169.26m², 일반철골구조 티에이치케이200 지붕판넬 단층보일러실 23.32m²(이하 '이 사건 A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당시 이 사건 A 토지에 관하여는 우리은행 명의의 2012. 9. 21.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1순위)]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A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우리은행 명의의 2012. 10. 8.자(이 사건 A 건물은 2013. 3. 18. 담보로 추가되었다)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2순위), 13억 2,000만 원(3순위)]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4. 3. 17. 위와 같이 우리은행에 561,895,369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13억 2,000만 원 근저당권 중 561,895,369원 상당을 양도받아 2014. 3. 19. 이 사건 A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위 13억 2,000만 원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양도액 561,895,369원)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및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1) 피고 B은 2013. 12. 10.경 피고 C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억 7,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4,000만 원, 잔금 지급시기 2014. 3. 31.)으로 정하고, 잔금 중 4,000만 원은 피고 C가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우암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3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만 원 및 잔금에 대한 이자 명목 1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피고 C가 2013. 12. 2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받아 2013. 12. 24.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는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우암새마을금고에 위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3)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3. 12. 10. 피고 D에게 이 사건 1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C에 대한 2억 원 잔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12.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피고 B은 2013. 10. 30. 피고 D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1) 피고 B은 2013. 9. 9.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3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661/1,983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2.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3. 12. 11.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3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대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16.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B의 재산 관계

1) 적극재산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데, 그 각 공시지가 내지 공시가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1부동산	45,846,504원 (= 963원/㎡ × 47,608㎡)	53,797,040원 (= 1,130원/㎡ × 47,608㎡)	개별공시지가
이 사건 2부동산	141,000,000원	144,000,000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사건 3부동산	38,668,500원 (= 19,500원/㎡ × 1,983㎡)	40,651,500원 (= 20,500원/㎡ × 1,983㎡)	개별공시지가
합계	225,515,004원	238,448,540원	-

2) 소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피고 B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561,895,369원(2014. 3. 17. 기준)
2	새청주새마을금고	150,000,000원
3	주식회사 신한은행	597,102,874원
4	서울보증보험	
5	중소기업진흥공단	200,000,000원
6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502,109,589원
합계 (원고 채무액 제외)		1,712,296,614원

【인정 근거】 피고 A, B: 민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다 제4,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주식회사 신한은행, 새청주새마을금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결과,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68,653,121원(= 대위변제금 561,895,369원 + 체당금 3,322,142원 + 추가보증료 3,435,610원) 및 그 중 561,895,369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4. 3.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4. 5.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1, 3매매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이 이미 이루어졌던 점,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1, 3매매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13. 8. 28. 이후부터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까지 계속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원고가 2014. 3.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561,895,369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다만,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록 원고가 이 사건 A 토지 및 건물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A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H)인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우리은행의 청구금액은 2,388,648,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 2014. 11. 10.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은 1,130,332,000원인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들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위 최저매각가격은 이 사건 A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인 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원(= 4억 8,000만 원 + 7억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A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2013. 12.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1매매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억 5,000만 원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이고(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평가가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참작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1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선의항변

피고 C는 피고 B의 자산상태나 피고 A의 경영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을다 제1 내지 5, 8 내지 17호층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피고 B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1부동산 인근에서
거주하는 동서 G으로부터 2013. 10.경 이 사건 1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2013. 12.
10.경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I의 참석 하에 그날 처음 만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그곳에 분묘를 이장하고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말경 및 2014. 1.경 지적현황측량 및 지적분할을 실시한
사실, 원고의 신청으로, 2014. 1. 22.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청주지방법원
2014카단50032), 2014. 2. 27.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중 1억 8,000만 원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대전지방법원
2014카합50044), 이에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위 2014카단50032에 관한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2014. 3.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청주지방법원 2014카기159), 피고 C는 이 사건
1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시기인 2014. 3. 31. 잔금 액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잔금 지급 이전에, 그것도 계약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이 석연치 아니하나,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기 전 서둘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피고 C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는 않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C는
피고 B와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 A, B의 채권채무상황이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이 사건 1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 C는 실제 전원주택 신축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 C는 이 사건 1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위 각 가처분
결정 등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B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 C가 이 사건 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반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1매매계약 잔대금채권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3부동산 중 661/1,98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3매매계약, 위 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3매매계약,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D는 피고 B에게 2003. 10. 6. 4,100만 원, 2003. 10. 7. 9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강원도 J 토지 및 이 사건 3부동산이 매각 시'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9. 4. 1억 원을 이자 연 2%,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D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각 대여원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3매매계약,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B의 자산상태나 피고 A의 경영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 B이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가 주장하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이나 보유한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하거나 채권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3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진 시기, 피고 D와 피고 B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는 피고 B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되며, 달리 수익자인 피고 D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성기

판사조서영

판사구자광

별지